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나590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2나5907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52877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석

담당변호사 김정석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효성

담당변호사 서동민

변론종결 2022. 7. 14.

판결선고 2022. 8. 1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52877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1)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쪽 12행, 14행, 17행의 ‘2019.’를 ‘2009.’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 1억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한 것은 준소비대차가 아닌 경계에 해당하고, 경계의 경우 신채무는 구채무와 동일성이 단절되어 채무의 성질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사이의 민사약정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여관업 또는 산소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매각 차익을 얻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매매대금 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3) 상사 소멸시효제도의 취지 및 원고와 피고의 친인척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서 민사채권으로 변하였으므로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경계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계의 경우에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기존 채권 · 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약정을 경계로 볼 것인가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가 매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은 여관으로 사용되어 왔고, 피고가 이를 매수한 후 2009. 12.경부터 2010. 9.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산소방 등의 영업을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여관업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부동산의 매수는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후 매각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피고가 원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도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앞서 본 사정 및 준소비대차계약과 피고의 영업 사이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

3)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상사 소멸시효가 아닌 민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류창성, 판사 정회일, 판사 오연수

1) 원고는 항소장 중 항소취지란에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라고 기재하였으나, 제1심 청구취지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이고, 원고가 항소장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설회한다.